

국 가 정 보 원

수신자 조태욱(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청파동 3가) 3층)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2021-276

접수일 2021-05-10

청구 내용	제목 : 국정원 실행 및 조치계획 그리고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내용 : 청구인(조태욱) 정보공개청구 내용 내용이 많아 등록이 안되어 첨부파일로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첨부: 청구인(조태욱) 6차 정보공개청구 내용(2021.5.9)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5월 9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조태욱</p>
-------	--

공개 내용	< 붙임 > 참조
-------	-----------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 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붙임 > 참조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 가 정 보 원



기안자
협조자
시행
우
전화번호 111

검토자

결재권자

OO-0000(2021.6)
주소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www.nis.go.kr
/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문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2021-276)에 대하여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項 기재 정보 ⇒ 부분 공개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된 문건 3건에 대해 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일 및 공개방법 안내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청파동3가) 3층 조태욱)로 6.11까지 등기우편 발송

다만, 공개 대상 문건 중 일부 내용은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 등 관련 사항 또는 제3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법 제8조>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공개 문건外 귀하께 既제공한 문건 중 위 청구 항목과 관련된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정보 중 既공개 문건 >

문건 제목	관련 청구項	결정 통지일
KT노조의 民勞總 탈퇴 추진(2008.7.6)	7)項	2020.12.18
KT 前노조 간부 활용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 발표	7)項	2020.12.18.

문건 제목	관련 청구項	결정 통지일
유도(2009.7.15)		
KT노조 민노총탈퇴관련 경영진대상 지원당부 (2009.7.16)	7)項	2021.5.7.

2. 8)-가.~다.項 기재 정보 ⇒ 비공개

해당 항목과 관련 청구대상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同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설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대외 공개시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8)-라項 기재 정보 ⇒ 보완요청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나아가 “청구인으로서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와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項~6)項 기재 정보 ⇒ 정보 부존재

귀하께서는 귀하의 이전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2021-217, 청구항목 제2항)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완 요청에 따라 청구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금번 청구항목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재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既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서에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을 적시함으로써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위 청구 항목은 여전히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 청구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행정안전부刊)>에 따라 부득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KT 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실태 및 가속화방안

2009. 4. 20

□ KT 노사 민주노총 탈퇴 추진 실태

- 勞使 대상 민주노총 탈퇴 지속 설득 활동으로 경영진은 물론 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등 핵심지도부내 탈퇴 共感帶는 형성되었으나
- 은 조합원 지지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5월內 탈퇴를 주저
- 이에 使側은 탈퇴 추진에 대한 노조지도부의 묵시적동의를 확보하고 6.1 KT·KTF 통합前 탈퇴를 마무리지을 복안 아래 강성세력인 '民同會' 견제 등 현장 노무관리를 한층 강화중

□ 따라서, 은 KT노조가 5월중 민주노총을 탈퇴할 수 있도록

- 에 협조적인 과 공조, 을 설득하고 4.30 50개지부장 선거시 全 집행부후보를 當選시켜 탈퇴 추진기반을 다지고
- 勞使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중인 年俸制 도입 등 이견 사안을 원만히 합의되도록 거중 조정하여 갈등요인 사전 제거
- 또한, 사측은 賃團協시 임금인상 등 노조에 선물 제공과 쟁점현안을 조기 타결토록 해 조합원들의 탈퇴 거부감을 완화토록 지도

□ 파급영향

- KT노조는 민주노총 대의원(1,000여명) 5% 차지·조합원 數 국내 3위 (2.8萬명) 등으로 탈퇴시 민주노총 세력 약화에 크게 기여
- 또한, 민주노총 산하 IT연맹 가입 노조 대부분이 KT 계열사로 이들 노조들의 연쇄 탈퇴도 예상되어 IT연맹 붕괴도 기대

※ 은 민주노총의 비리·취약점 등을 지속 발굴, 보수언론 및 단체 등을 통해 부각하는 등 사회적 탈퇴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하겠음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견인을 위한 측면지원 필요

- KT노조는 민노총 소속의 강성조직이라는 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면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민노총 탈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 7.10 조합원(2萬 8,000여명) 찬반투표 공고에 이어 오는 7.17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인바
 - 사측은 現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자체 조사결과 88%가 지지)를 받고 있어 탈퇴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민노총은 그간 KT노조가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등 전형적인 **어용조직**이었다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 **민노총의 탈퇴**에 이어 산하 노조중 3번째 규모인 KT노조가 탈퇴시 여타 대형조직 탈퇴가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판단
 - **민노총의 탈퇴** 등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접 회유·설득에 나서는 등 탈퇴 저지에 안간힘
- * 강성파들은 정부 공작 운운하며 KT노조 집행부 대상 폭력행사·KT 본사 점거농성 불사 공연
- KT노조가 탈퇴시 민노총 勢 위축은 물론 산하 조직의 민노총 이탈 촉발 등 **긍정적 파장**이 기대되므로 탈퇴성사를 위해 치밀한 이면관리 필요
- ① 노조로 하여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노총 탈퇴는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 선택임을 부각, 여론 先占 및 민노총의 개입시도 차단
- ② 민노총이 정부 개입설 등 제기시 **사법처리**(허위사실 유포죄) 가능성을 강력 경고, **비난공세를 원천봉쇄**하는 등 적극 대응
- ③ 메이저 언론과 협조, **민노총 비리·폐해**를 부각하는 시리즈 기사 게재 등을 통해 여타 노조의 **脫민노총 분위기 확산** 유도

※ 배 포 : 대통령실장, 사회정책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KT, 명예훼손 혐의로 KT노조反집행부 핵심 인사 고소 토록 조정(保安)

'09. 7. 14

1. 당 는 KT 사측으로 하여금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을 비난하며 회사 명예를 훼손한 反집행부
핵심인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토록 유도

2. 관련 내용

○ 조태욱 등 KT 노조 反집행부인 현장조직 '민동회' 핵심 인사 14명이

* 조태욱은 지난해 연말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과 경합을 벌인 인물

- 지난 7.13 오전 분당 소재 KT 본사 앞에서 'KT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폭거로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다'
제하 기자회견을 실시

-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KT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網사업 부문
분리 분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KT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 당 는 민노총 탈퇴 실무 책임자인 KT 에게

- '민동회'측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
하였다

- KT 본사 앞 기자회견을 악용한 연좌농성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인 만큼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민동회 측의 탈퇴 방해 활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이에, KT 사측은 금일 오후 조태욱 등 7.13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동회 회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치
- 한편
 - ‘민동회’ 회원들은 사측이 고소하자 민노총과 연계하여 탈퇴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어제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근무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고
 - 노조 집행간부들은 7.17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민노총 탈퇴 당위성을 홍보하는 조합원 교육 및 투표 참가를 독려하고 있음(끝)